

# 교직원 연봉제 규정

제정 2019년 01월 14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복음신학원 정관 제45조 및 제7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 교”라 한다)의 교직원 연봉제(이하 “연봉제”라 한다)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연봉제”란 급여를 일 년 단위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② “연봉액”이란 속인성 수당 등을 제외한 개인 연간 보수 총액을 말한다.
- ③ “연봉월액”이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말한다.
- ④ 속인성 수당이란 가족수당, 직책수당, 연구수당 등을 말하며,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.

**제4조(교직원의 연봉 결정 및 조정 등)** ① 교직원의 연봉은 교직원 개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12월 말에 책정한다.

- ② 매년 12월 말에 책정하는 교직원의 연봉액 기준 및 방식은 매년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- ③ 급여 지급은 연봉월액과 속인성 수당 등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④ 신규임용, 휴직, 복직 및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사망 또는 면직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.
- ⑤ 신규임용 교직원에 대한 연봉은 자격조건, 경력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최초 임용계약 시 정한다.

**제5조(연봉산정을 위한 성과평가 및 통보)** ① 교직원 성과평가의 경우 교원 성과평가는 교학처에서, 직원성과평가는 총무처에서 총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평가를 시행하고, 그 결과를 총무처에서 수합하여 조정한다.

- ② 교직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③ 연봉이 결정되면 교직원과 별도의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연봉통보로 대체한다.

**제6조(연봉지급의 제한)** ① 교직원의 휴직, 징계,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정관, 관계법령 및 학칙,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월액

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7조(성과급 책정)** ①재정 상태와 성과를 고려하여 교직원에게 개인 연봉액 이외의 성과급을 따로 책정·지급할 수 있다.

②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와 적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8조(비밀유지)** 연봉통보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9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연봉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1. 제5조에서 정한 성과평가는 본교의 성과평가 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그 시행을 유보한다.

2. 연봉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교직원 보수규정에 우선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.